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기관장의 책임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기본적 틀만 규정하고 있어 세부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실무자 제도가 없어 업무 과중과 전문성 저하 우려가 있음. 또한 소방·피난계획, 업무대행, 기록관리 등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관별 운영 편차와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및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체계성과 현장 집행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및 정의를 명확화(안 제2조·제3조,안 별표 1)

- 공공기관 범위와 적용대상을 별표로 정리하고,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실무자’ 등 핵심 용어 정의 신설

나. 기관장·관리자·실무자 간 책임체계 확립(안 제5조)

- 기관장은 총괄·감독, 관리자는 실무 총괄, 실무자는 보조 및 현장지원 담당

다. 세부 업무범위 및 절차 구체화(안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

- 소방·피난계획 수립·시행, 자위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화기취급 감독, 기록관리, 초기대응 등 명확화

라. 선임·통보·연기 제도 정비(안 제6조·제7조, 안 별표 2·별표 3)

- 소방안전관리자·실무자 자격기준 세분화, 선임 통보·연기 절차 및 서식 신설

마. 업무대행 제도 보완(안 제8조, 안 별표 4)

- 대행 가능 범위, 인력 자격·배치기준, 점검·보고·기록 의무 명확화

바. 기록관리 체계 강화(안 제16조)

- 기록 작성·보관 주기 및 책임자 규정, 기록표 서식 통일 및 보존 기간 명확화 등 관리기준 마련

사. 관리·감독 체계 강화(안 제18조)

-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실무자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감독기관은 연 1회 이상 기관장 업무 점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기관장”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소방안전관리”란 공공기관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교육·훈련 등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란 공공기관의 사무·업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한 자로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 직위에 있거나 감독 직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방안전관리실무자”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범위 및 세부 적용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피난계획이 포함된 소방계획의 수립·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5조(기관장 등의 책무) ① 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실무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를 선임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실무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실무자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가목5)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실무자의 선임도 포함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이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 내에 실시되지 않아 제3항에 따른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서와 강습교육 수강신청 접수증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1회에 한하여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해당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기간 내에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재한 경우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까지 제4조의 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임시켜 선임할 수 있다.

⑦ 공공기관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으로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 기관장은 제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실무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

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 실무자 선임 통보서
2. 소속 부서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선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등) ① 기관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다음과 같이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제4조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의 배치 기준, 자격, 방법 등을 별표 4에 따른다.
-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보수 또는 정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기관장은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등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안전관리자등의 실무경력)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등으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실무 경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실무자로 선임된 실무 경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등은 실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 제1호나목 5)의 자격으로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일부 대행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등

제11조(소방계획의 수립)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계획서를 작성·정비하여야 한다.

1. 최초 작성: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한 날

2. 수정 작성: 소방계획서가 변경된 날

②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각 층에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 영상을 제공

하는 방법

제13조(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자위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을 두고, 각 반(班)의 구성 및 반별 인원은 해당 기관의 근무자를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자위소방대의 대장, 부대장 및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 및 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구성 상태를 점검하고 구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교육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한 날로부터

터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전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시 근무 인원이 1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공공기관의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2. 합동 소방훈련: 소방관서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소방훈련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며 출입이 제한되어 무인(無人)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비상시에 대비한 소방훈련만

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화기취급의 감독)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에서 증축, 개축, 실내건축 또는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설비 등과 관련한 공사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사 또는 작업 관계인에게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또는 불꽃·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室)이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경우 해당 실의 사용책임자는 그 공간에서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안전관리 등 업무의 기록)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화기 취급 감독에 관한 사항은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시점에 즉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월 2회 이상

2.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월 1회 이상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화재발생시 초기대응) ① 기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경보 발령, 대피 유도, 인명 구조, 초기 진화 및 연소 확대 방지 등 필요한 초기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현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감독 등)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실무자의 업무 수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은 연 1회 이상 해당 기관장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이 없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제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제7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및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방관서로부터 통보 또는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거나 조치계획을 소방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소방안전관리의 특례)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한 공공기관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4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공공기관 전체를 폐쇄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 근무자 및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신청서와 함께 유예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신청을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행 범위에 한하여 대행 인력이 작성·제출한 별표 4 [표 3]의 점검표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기록표(소방·피난·방화시설에 한정) 및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의 준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29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
안전관리자는 제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
조”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로 한다.

[별표 1]

공공기관의 범위 및 세부 적용 대상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지방의회
-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나. 국공립학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공공기관. 다만,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마.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 유치원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공공기관의 세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1) 공공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 2) 공공기관이 일반인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임차하여 전부를 공공기관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일반인에게 임대하고, 그 관리를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
- 4)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공공기관과 일반인이 각각 소유권을 갖는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분만 공공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공공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 소유권을 보유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전부를 일반인이 사용 및 관리하는 경우
- 2) 일반인이 특정소방대상물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비고

1. “사용”이란 해당 기관의 고유한 업무 수행 또는 공공목적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이용하거나 운영(運營)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관리”란 소방안전관리를 의미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제4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기관장과 관리자가 체결한 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제2호나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가목의 종합점검 대상을 적용할 때에는 1)부터 5)를 적용한다.
4. 제2호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별로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인이 소유한 부분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공공이 소유한 부분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원활한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 소유자와 공공기관은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말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2]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제2조제 4호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5) 강습교육(「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호 및 마호에 한한다.)을 받은 사람. 다만 이 경우 별표 3 제2호가목의 소방안전관리실무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2.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을 포함한다)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3)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4) 강습교육(「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마목에 한한다.)을 받은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다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중복하여 선임할 수 없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따른다.
3. 제1호나목5)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수료하였으나 소방안전관리실무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1)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5. 제2조제4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사무·업무분장,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직위 또는 직급의 지정은 해당 기관장이 결정한다.

6.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산정할 때,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자격 기준별 실무경력 기간을 해당 실무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선임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3]

소방안전관리실무자를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대상별
자격기준

1. 소방안전관리실무자를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별표 2에 따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나. 국공립학교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2. 소방안전관리실무자의 자격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표 2 제1호나목5)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는 사람이 선임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나. 특급(가목 이외의 경우), 1급, 국공립 또는 사립학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을 포함한다)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3)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 4) 강습교육(「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마목에 한한다.)을 받은 사람

3.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1.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실무자의 자격 기준을 따른다.

2.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실무자를 선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실무자를 포함하

여 소방안전관리와 관련된 사무 및 업무분장을 편성하여야 한다.

[별표 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1. 업무대행의 범위

- 가. 업무대행의 범위는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에 따른다.
- 나. 기관장과 관리업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세부 업무대행 범위를 정하되, 표 3에 따른 점검표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법인 또는 단체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 라. 기관장과 관리업자 간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관장 또는 관리업자는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 사실 확인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업무대행 인력의 자격기준

- 가. 대행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 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다목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따른다.

3. 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이하 “대행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해야 한다.

-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및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

[표 1]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	-------

	기술등급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별표 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 표에서 소방안전대상물의 등급과 설치된 소방대상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는 설치된 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대행인력 1명의 1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업무량은 [표 2]에 따라 산정한 배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합산점수는 8점(이하 “1일 한도점수”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면적별 배점기준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연면적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이상
3급	전체	0.7		
특급, 1급 또는 2급	1,500㎡ 미만	0.8	0.7	0.6
	1,500㎡ 이상 3,000㎡ 미만	1.0	0.8	0.7

3,000㎡ 이상 5,000㎡ 미만	1.2	1.0	0.8
5,000㎡ 이상 10,000㎡ 미만	1.9	1.3	1.1
10,000㎡ 이상 15,000㎡ 미만	-	1.6	1.4

비고

1.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세대부를 제외한 연면적과 세대수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종합점검 대상의 경우 32, 작동점검 대상의 경우 40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더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환산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연면적 범위를 1만제곱미터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본다.
2. 터널, 지하구의 연면적 계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제3호 가목 6)에 따른다.

다.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의 이동거리(좌표 최단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 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라. 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마. 별표 2 제1호 및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표 2]의 배점에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4. 업무대행의 방법 및 점검표

가. 소방시설 점검 시에는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하거나 오동작한 경우에는 해당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도 점검하여야 한다.

나. 방문 점검 시 내부 공사(건축, 설비 등) 또는 내부 구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다.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하도록 기관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라.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마. 점검 완료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기관장)에게 점검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대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기관장)에게 알리고, [표 3]에 기록하여야 한다.
- 바. 제8조에 따라 관리업자는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월 2회 이상, 일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월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표 3]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관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분야에 대한 업무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 사. 관리업자 또는 대행인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아. 기관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표 3]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점검일 기준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표 3]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건물명		점검일	년 월 일(요일)
주 소			
점검업체명		건물등급	급
설비명	점검결과 세부 내용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			
기타			

확인자	기관장(소방안전관리자) (서명)
기술인력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대행인력: (서명)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대상	대상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대상등급	☐ 특급 ☐ 일반
	연기기간	
	연기사유	
강습교육	교육기간	
	교육장소	
	입교자명	
	소속직책	
연기기간 화재 안전 조치사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연기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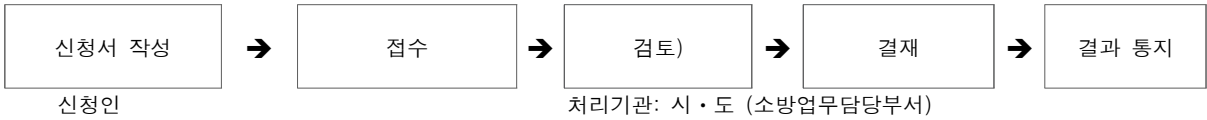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제출서류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강신청 접수증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통보서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실무자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명칭			용도	
	기관장			전화번호	
	주소				
	건축물	사용승인일	등급	층수	연면적(㎡)
			☐ 특급 ☐ 일반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자

소방안전 관리자등 (선임자)	선임사유	☐ 신축, 증축, 재축 등 ☐ 소방안전관리 등급 변경 ☐ 양도, 양수 등 ☐ 인사이동, 전보, 퇴임 등 ☐ 업무대행(신규, 해지) ☐ 기타()			
	선임기한		선임일자		
	선임자명		생년월일		
	선임자 직위		전화번호		
	선임자격	☐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 및 실무경력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특급 ☐ 1급 ☐ 2급) ☐ 강습교육(수료자) (☐ 특급 ☐ 1급 ☐ 2급 ☐ 공공)			

업무대행 [] 해당 [] 해당없음	업체명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대행기간	~	전화번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주의사항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방계획서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대상명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	--	------	--	-----	------

소방안전관리 업무

구분	주요내용	비고
1. 소방계획 수립·시행		
2. 피난계획 수립·시행		
3.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4. 소방·피난·방화시설 관리, 방화구획		
5. 업무대행 및 감독		
6. 화재발생 초기대응		
7. 기타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구분	대상자(명))	참석자(명))	주요내용	비고
1. 자위소방대				
2. 근무자 등				☐ 자체 ☐ 합동

화기취급의 감독

구분	조치사항					
1. 용접·용단 등 승인	승인여부		승인기간		승인업체	
2. 작업자 안전조치						
3. 기타 조치사항						

기관장의 관리·감독 내용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대상	대상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대상 등급	☐ 특급 ☐ 일반
	유예 기간	
	유예 사유	

화재안전조치	건축물 사용	
	출입 조치	
	전기 시설	
	가스 시설	
	기타 사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유예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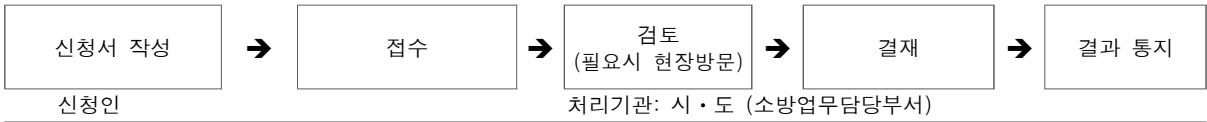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제출서류	공공기관 전체를 폐쇄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7443